

# 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40,318,011	4,209,540
일반회계	121,854,893	3,655,647
특별회계	18,463,118	553,894
기타특별회계	18,463,118	553,894
의료급여기금	236,776	7,103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1,227,766	36,833
주거환경개선사업	414,356	12,431
주차장	16,318,183	489,545
지하수관리	204,982	6,149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61,055	1,83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67,58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외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교부되는 국·시비 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재원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